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중단 처분대상자에게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.

2024. 11. 26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처분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제5항, 제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0현	95.05.25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	○ 수급자격 인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	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08번길 9-1(정왕동)

4. 공고기간: 2024.11.26. ~ 2024.12.10. 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기경(Tel. 031-496-19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